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9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6.

발 의 자: 엄태영·김태호·김승수

박덕흠 • 강선영 • 이달희

박형수 · 김장겸 · 정동만

이종배 • 고동진 • 최보윤

김예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 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·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,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·학령을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,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

직사회에서부터 일·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제2 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). 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2항제4호 중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"를 "1 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(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 교 3학년 이하)의"로 한다.

제72조제7호 중 "3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1조(휴직) ① (생 략)	제71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	②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			
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		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	
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			
명하여야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	4. <u>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</u>		
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	학년 이하(대통령령등으로 정		
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	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		
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	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		
된 때	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		
	교 3학년 이하)의		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
제72조(휴직 기간) 휴직 기간은	제72조(휴직 기간)		
다음과 같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7.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	7		
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			
<u>3년</u> 이내로 한다.	<u>4년</u>		
8. ~ 10. (생 략)	8. ~ 10. (현행과 같음)		